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2006. 2. 6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0·14·15조

3.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 선임방법(안 제2·3조)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직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함

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6·7조)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9·10조)

센터에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함

라.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안 제13조)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 건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6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원봉사 센터 설치와 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 행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재고는 물론 자원봉사활성화에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되며

- NGO 등 자원봉사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추세임에 비추어 입법절차는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중구를 비롯한 동구, 북구, 동래구에서는 조례가 기히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고 여타 구에서는 입법예고 등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2006년 7월 28일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 금 배